



AI 상시방역대책 추진강화 계획

농림수산식품부

1. 배경

-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(3차례)은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, 북방철새 도래시기(10월 중순~12월)로 AI 유입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방역 추진강화

- 최근 AI 재발국가(중국, 몽고, 러시아 등)는 겨울철새 이동경로에 위치

2. 그간 추진실적

- 고병원성 AI의 재발을 막기 위해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“AI 상시방역체계”를 구축·운영 중(2008. 7월~)

- 과거 AI 발생지역 등 재발위험이 높은 22개 시·군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
 - 매주 임상예찰(시·군 예찰팀),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로 농장 내 AI 유입위험 차단
- 철새 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내 바이러스 검사로 철새를 통한 AI 국내 유입여부

조기 파악 및 예방조치

- 철새에 의해 AI(H5/H7형)가 오염된 지역의 주변 소독 등 방역조치 및 농장 관계자 출입제한 등으로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

* 최근 저병원성 AI(H5형) 검출지역 : 전남 함평 대동저수지(2008.12.4), 충북 음성 양덕 저수지(2009.4.6)

- AI 병원체 잠복원인 오리농가에 대해 분기별 바이러스 검사 실시를 통한 AI 조기 검색 및 발생위험 사전차단

*2008.10.4 충남 예산 종오리 농장(1)에서 저병원성 AI(H5형) 바이러스 검출로 사전 예방차원에 서 오리와 알을 매몰처분

- 닭 농가에서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한 저병원성 AI(H5형) 항체검출에 따른 매몰 등 예방조치(전남북 지역 토종닭 5농가, 2009. 2. 17~19)

- 저병원성 AI(H5형)의 확산 및 내재화 시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위험성이 증대됨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

* 변이사례(1959~2003년초) : 고병원성 AI 21건 발생 중 5건(미국·멕시코 등)

■ 중국 등 주변국가의 AI 발생에 따라 해당 국가(중국, 동남아 국가) 운항노선에 대한 탐지건 집중 투입 등 국경검역 강화로 유입방지

- 인접국가의 AI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중 「관심단계」 발령을 통한 비상 방역체계 구축운용 (2008. 11월부터)
- 전국 공·항만에서 AI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조류 및 가금육을 탐지건 등으로 검색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

*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공·항만 검역인력 증원 배치 운용 등

■ AI 조기검색,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기술 및 역량 제고

-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순회교육(2009. 5~6월), 지자체 등 관계자 방역교육 (2009. 2월), 상시방역추진 실태점검 (2009. 3월)
-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 매뉴얼 보완(2009. 5월), 시·도(시·군·구)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(2009. 7~9월)
-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 차단방역 수칙 및 AI 의심축 신고요령 등에 대한 중점 홍보

◆ 미리 검색해 내는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운영(20억원/년)으로 변이가 가능한 저병원성 AI 조기박멸 등 국내 발생 차단

◆ 약 1,700억원의 방역비용 절감효과(소비위축 등 간접피해비용 제외)

* 우리나라는 2003.12~2008.5.까지 AI가 3차례 발생, 총 5,183억원의 방역비용 투입

3. 상시방역대책 추진강화

추진방향

- ◆ 가축방역기관(단체)의 상시방역체계 강화
- ◆ AI 예찰검사 확대 등 예찰시스템 지속 강화
- ◆ 농가의 차단방역 등 현장방역 맞춤형 집중홍보 및 관리

■ 가축방역기관(단체)의 상시방역체계 강화

- 방역기관 및 생산자 단체에 방역대책상황실 운영(금년도 10월중순 ~ 익년도 4월)
 - (기존) 비상연락체계 유지 → (강화) 평일/휴일 근무조 편성기동

* 근무시간 : 평일 08:30~20:00, 토요일 및 공휴일 10:00~17:00

- 유관기관 및 단체의 방역실태 주 단위 점검으로 전환 추진

- AI 상시방역체계 강화에 따른 농가 차단 방역 지도·점검 및 상시예찰 등 조치사항 이행철저(붙임1 참조)

■ AI 예찰검사확대 등 예찰시스템 지속강화

- 겨울철새 도래시기(10월 중순~12월) 및 통과시기(3~4월)에 재발위험이 높은 지역 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(확인주기: 매주 1회 → 3일 간격)
-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간 예찰업무 수행을 위한 AI 상시방역 예찰정보화 시스템 개발(시범운영: 2009. 11~12월)
- 유입가능 경로별 예찰검사 확대 및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강화(2009. 9월~)
 - (기존) 닭·오리·철새 → (추가) 메추리·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
 - 신종인플루엔자 조류감염 사례발생(2009. 8월, 칠레)에 따라 AI 예찰검사이시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병행 실시
- 야생조수(야생조류 등) 폐사체 검사 강화(검역원)
 - 환경부와 협조하여 야생조수 폐사체 신고·검사체계 구축운영 및 환경감시원 홍보실시(SMS 등)

■ 농가 차단방역 등 현장방역 맞춤형 집중 교육(홍보) 및 관리

- 가금류 농장 종사자, 재래시장 가금류 판

매업자, 가금류·분변·사료 등 차량운전자, 유관단체 등 방역관계자 집중교육·홍보(11~12월)

- 방역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물(리후렛, 스티커, 소독실시기록수첩 등) 배포 및 광고게재(수의과학검역원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지자체 등)

* AI 특징,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 요령, AI 의심축 신고요령 및 보상체계, AI 발생시 대처요령, 야생조류와의 접촉기회 차단,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 등

축산농가 예방수칙 (안)

- ◆ 축사·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, 그물망 설치,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
- ◆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
- ◆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
- ◆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·러시아·몽고·태국·베트남·인도네시아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



- AI 방역관련 실태점검 및 지도·단속·점검 등 추진(11~12월)
- 가금류 사육농가, 도축장, 분뇨처리장 등에서 사료·동물약품·가축 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태 점검

* 지자체에서는 가금류 사육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

- 재래시장의 가금류 운반차량, 가금류 구입 및 판매실태, 불법적인 가금류 도축판매 단속 등 취약지역 관리강화

* 대도시 가금류 판매시장 집중점검 및 단속, 가금류 유통상인의 운반차량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여부 점검 등

- 철새도래지 관광행사 관광객 방역조치 철저(지자체)

* 관광객 신발소독(발판소독조 설치), 철새분변 등 접촉 시 AI 오염가능성 홍보(입간판 설치) 등

- AI 발생대비 가상훈련 등을 통한 방역역량 제고
- 지자체 등 방역관련기관 대상 도상훈련(CPX) 실시(11월)

■ AI 매몰지 환경오염방지대책 지속 추진

- AI 매몰지(722개소) 실태조사(9. 24~10. 10)에 따른 침출수 확산 의심 매몰지 등 보완조치(10. 31까지)

- 외관상 침출수 유출 매몰지는 없으나, 환경부의 환경영향조사결과 침출수 확산 의심 매몰지(8개소)는 유공관 설치 및 흡

입처리

- 표지판 소실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매몰지(46개소)는 보완조치

■ AI 유입방지를 위해 중국 등 발생국가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

- AI 발생국 운항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집중투입, 휴대품 검색 및 홍보활동 등 국경검역 강화
- 밀수입되는 애완조류 등에 대한 밀수단속 강화(해양경찰청·관세청 등 협조)

4. 향후 계획

■ AI 상시방역대책 추진강화 조치계획 시달(시·도 등 가축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)

- 각 방역기관별 상황실 운영(2009. 10. 16~) 및 주 단위 점검 등

■ AI 방역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·배포(2009. 11월 중순까지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수의과학검역원)

■ AI 발생대비 가상훈련 실시(2009. 11. 20 예정)

■ AI 상시방역 실태점검(2009. 11월말~12월초)

[붙임 1] AI 상시방역체계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**① AI SOP 및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숙지(가축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)**

- AI는 국가 위기관리 사항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고, 방역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사 시에 대비하여 이를 숙지할 것
- 농식품부 : 위기관리 표준매뉴얼,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, AI SOP
- 시·도 및 시·군·구 : 현장조치 행동매뉴얼
 - * 각 방역기관(단체)에서는 AI 방역실시요령, 긴급행동지침(SOP)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(해당기관의 기관별 조치사항 숙지)
- 2008. 11. 12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 “관심” 단계 발령 중
 - *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고병원성 AI, 구제역 및 신종 병원체에 의해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여 위기경보 발령(위기수준에 따라 관심 → 주의 → 경계 → 심각한 4단계 구분)

② AI 예찰활동, 홍보, 교육 및 점검강화(시·도, 시·군·구 등 가축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)

- ① 관내 관련협회·단체 등과 공동으로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해외 AI 발생동향 및 차단방역 정보제공(SMS 문자메시지 발송 등)
- ② 농장소독 등 자율 차단방역 활동철저 홍보 및 소독 실태 등 지도·점검
 - 소독제 선택, 구체적인 소독요령 등을 검역원·양계

협회·계육협회 홈페이지에 게시·홍보(리후렛 제작·배포 등)

- ③ 관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AI SOP의 준수사항 및 방역관리지침 이행철저 홍보 및 점검
- ④ 소독실시요령·차단방역·임상증상 및 신고요령 등 홍보내용을 정리·배포

③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 등 차단방역 이행철저 지도(시·도, 시·군·구 등 가축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)

- ① 농장 출입차량 및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소독조치
- ② 가금류 사육농장주 및 농장종사자의 철새도래지 방문금지
- ③ 철새 등 야생조류와 접촉이 가능한 사육 시설은 그물망 설치
- ④ 야생조류와 접촉 위험이 높은 저수지, 하천,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는 야생조류 분변오염 주의, 야생조류 접근방지 장치·기구 설치
- ⑤ 농장 출입시 농장전용 신발(정화) 신기, 작업복 입기 운동 전개, 신발과 작업복의 주기적 세척 및 소독 실시
- ⑥ 닭과 오리의 운송차량(어리장) 세척 및 소독 강화 등

④ 방역취약지역인 재래시장 유통가금류 및 가금류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(시·도 및 시·군·구, 생산자단체 협조)

- 관내 재래시장 유통(판매)가금류에 대한 점포(유통



- 상인별 운반차량(운전자), 가금류 구입농가 현황 파악 및 소독실태 점검
- 자가조리 판매대상 도살허용지역 외 지역(가든형 식당 등)과 재래시장에서 불법도축 단속(축산물위생부서 협조)
- 가금류 운반(수송)차량 현황 파악 및 소독실태 주기적 점검 실시
- 관내 재래시장 가금류 유통(판매)업자, 가든형 식당 영업자, 가축·분뇨·사료 등 운반차량 운전자 현황파악 및 소독점검
 - * 소독실시 및 기록여부 등 지도·점검(위반자 행정처분 이행철저)
- ⑤ 집중관리지역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전국 종오리 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(시·도, 시·군·구, 오리협회 등 생산자 단체)
 - 재발위험이 높은 22개 지역(시·군)에서 시·군 주관으로 예찰팀을 구성, 모든 가금류 농가 전화 및 임상예찰 지속 실시
 - 임상예찰 확인주기는 철새도래시기(10월 중순~12월, 3~4월)에 주 1회에서 3일 간격으로 강화하고, 기타 시기는 주 1회 이상 임상예찰 실시
 - * 가축질병 위기경보 “관심단계” 발령 등에 따른 임상예찰 강화추진
 - 종오리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
 - 오리협회에서 전국 종오리 사육농가(109개소)에 대한 일일 전화예찰 지속 실시
 - 시·도(시·군)에서는 오리협회 지부 등과 연계하여 관내 사육농가에 대한 산란을 저하 등 이상증상 유무를 확인 점검 실시
- 관상(전시)용 사육농가 등에 임상예찰 실시
 - 시·군에서는 관내 관상(전시)용 조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
 - 익년도 5월까지 주 1회 전화예찰
 - 친환경 벼농사 사용오리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
 - 농가에서 일일 임상예찰 실시 및 폐사 등 의심증상 발견시 시·도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방역체계 구축
 - 육계농가에 대한 주기적 임상예찰 실시(시·군)
- ⑥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시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을 위해 시 발생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상대책 홍보 (수의과학검역원, 시·도, 시·군·구 및 생산자 단체)
 - 시 의심축 발견시 농가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
 - 시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, 생계안정자금, 소득안정자금 및 입식자금 지원 등 충분한 수준의 정부 보상대책을 운영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
- ⑦ 시 의심축 신고 또는 모니터링 검사(1차 검사)에서 양성 검출 시 해당농장에 대한 초동방역팀 운영철저 (시·도, 시·군·구, 시·도 방역기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)
 - 시·도(시·군)에서는 시 의심축 발생 시 해당농장 이동제한,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및 기초적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 투입을 요청할 것
 -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요청 받은 즉시 초동방

역팀을 해당농장에 파견하고 검사결과가 최종 확인될 때까지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 방역조치

⑧ AI 예찰 세부계획, 예찰체계 개선사항 등에 따른 예찰 검사 철저(수의과학검역원, 시·도 가축방역기관, 수의과대학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)

- 시·도 방역기관에서는 전국 종오리 및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분기별, 축사별 일제검사, 저병원성 AI 검사(종계장, 산란계농장) 적극 추진
 - 시·도(시·군)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중인 오리는 철새 도래 집중시기 전까지 도축 및 도태 등 적절한 후속조치 실시
 - 수의과학검역원 및 수의과대학에서는 해당 AI 검사업무 수행철저
 - 가금류 사육농가의 시료채취 시기는 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출하 7일 전에 실시
 - 메추리, 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에 대한 AI 검사대상 확대에 따른 예찰검사 수행철저
 - AI 검사기관 및 방역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운영
 - 1차검사(시·도 가축방역기관, 수의과대학) 결과에 따른 신고한 방역체계 구축운영
 - 시·도 가축방역기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간 시료채취 등 AI 예찰업무 협조체계 구축
- ⑨ 기타(가축방역기관 및 생산자 단체)**
- AI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지속 강화
 - * 임상예찰, 모니터링, 방역대상(농가, 운송차량 등) 중점관리 및 지도 등
 - 중국 등 주변국 AI 발생에 따른 위기경보 관심단계

발령(지속) 및 철새 유입시기 등에 따른 AI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철저

* 자체 계획에 따라 평일·휴일 근무조 편성 및 가동 등

- AI 예찰 추진실적 주간보고 이행 철저
- AI 발생대비 사전준비 철저(시·도 및 시·군·구)
 - ① 철저한 이동통제를 위한 관내소속 유관기관(지방경찰청 등)과 협조체계 구축(시·도별로 사전 협의 등)
 - ② 관내 모든 가금류 농장 현황과 연락처(핸드폰) 파악 및 정비
 - * 발생 시 이동제한명령 개별통지 체계구축(SMS 문자메세지 병행통보)
 - * 의사환축 또는 환축 발생 시·도외의 타 시·도에 대하여 감수성 가족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 실시
 - ③ 긴급방역 물자·장비 조달방안 및 인력동원 체계 점검
 - * 의심축 발생시 오염지역/위험지역내 상주 공무원 지정 또는 배치 체계점검
 - * 살처분 매몰지 사전선정, 살처분 매몰방식 개선에 따른 점토광물질 사전확보 등
 - ④ AI 발생에 대비하여 시·군(시·도)별 시나리오 연습철저 등
 - * 관련 공무원의 법령 및 규정숙지
 - * 가상 발생지를 여러 지역에 정하고 지역별 통제초소 설치지역 파악
 - * 살처분 인력구성, 장비 및 컨테이너 동원준비 철저
 - * 시·군(시·도)별 가상훈련을 통한 시나리오 숙지